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중곤 소유물건(2025타경623)

의뢰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종서

감정평가서번호: 리치2509-020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치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박정웅

| | | | | | | |
|--------------------|-------------------------------|-------------|-------------------------|-------------|--------------|-------------|
| 감정평가액 | 이억팔천구백칠십팔만원정 (₩289,780,000.-) | | | | | |
| 의뢰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박종서 | 감정평가 목적 | 법원경매 | | | |
| 제출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경매2계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김중곤 (2025타경623) | 감정평가 조건 | - | | | |
| 목록표시 근거 | 귀 제시목록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 기타 참고사항 | - | 2025.10.10 | 2025.09.23 ~ 2025.10.10 | 2025.10.10 | | |
| 감정평가내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토지 | 1,366 | 토지 | 1,366 | - | 285,380,000 |
| | (제시외 수목) | (1식) | (제시외 수목) | 1식 | - | 4,400,000 |
| | | 이 | 하 | 여 | 백 | |
| 합계 | | | | | ₩289,780,0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 | | | |
| " 별 지 참 조 " | | | | | | |

평 가 의 견

1. 감정평가목적

본건 기호(1)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소재 상세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기호(2)는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동 소재 여수검역소 남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경매목적의 감정평가건임.

2. 대상물건 개요

1) 대상물건

가) 토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 기호 | 소재지 | 지목 | 이용상황 | 면적(㎡) | 용도지역 | 형상지세 | 비고 |
|----|-------------|----|------|-------|----------|------------|----|
| 1 | 덕양리 1142 | 전 | 전 | 1,230 | 자연 녹지 | 부정형 완경사 | |

◎ 전라남도 여수시

| 기호 | 소재지 | 지목 | 이용상황 | 면적(㎡) | 용도지역 | 형상지세 | 비고 |
|----|--------------|----|------|-------|-----------|-------------|----|
| 2 | 동산동 127-1 | 대 | 나지 | 136 | 1 종 일주 | 사다리형 완경사 | |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 조사완료일을 기준하여 2025년 10월 10일로 함.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이유

본건의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09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평 가 의 견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이론 등에 의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

4.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조항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감정평가방법

- (1)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방식에는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인 원가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인 비교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인 수익방식이 있음.
- (2) 원가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정도의 비용이 투입 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 (3)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정도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라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시장에서 거래 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평 가 의 견

- (4) 수익방식이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정도 수익(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투자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다) 대상 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

- (1)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이론에 의해 대상 물건을 개별로 감정평가하였음.
- (2)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되, 다른 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라) 기타

- (1) 본건 기호(1)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감나무, 복숭아나무, 앵두 등)이 소재하여 별도 평가 하였으며, 평가외한 이동식 컨테이너(1식) 소재함.
- (2) 본건 기호(2) 토지는 인근 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선 등은 측량을 요함.

평 가 의 견

5. 토지가액의 산출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가) 적용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나) 비교 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함.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2025.01.01 기준)

| 기 호 | 소재지 | 지목 | 이용 상황 | 면적 (㎡) | 용도지역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공시지가 (원/㎡) |
|--------|-------------|----|----------|-----------|----------|----------|------------|---------------|
| A | 덕양리 1132 | 전 | 전 | 2,079 | 자연 녹지 | 맹지 | 부정형 완경사 | 21,300 |

(전라남도 여수시)

(2025.01.01 기준)

| 기 호 | 소재지 | 지목 | 이용 상황 | 면적 (㎡) | 용도지역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공시지가 (원/㎡) |
|--------|--------------|----|----------|-----------|-----------|-----------|------------|---------------|
| B | 동산동 115-4 | 대 | 단독 주택 | 178 | 1 종 일주 | 세로 (불) | 세장형 완경사 | 266,500 |

평 가 의 견

다) 시점수정

(1) 자가변동률

* 전라남도 여수시의 용도지역별 자가변동률을 적용함.

| 기 간 | 자연녹지지역 |
|----------------------------------|--|
| 2025.01.01. ~ 2025.08.31. | 0.195% |
| 2025.09.01. ~ 2025.10.10. | -0.028(-0.022 × 40/31)% |
| 누 계 2025.01.01. ~ 2025.10.10. | 1.00167 배 (1+0.00195) × (1+ -0.00022 × 40/31) |

| 기 간 | 주거지역 |
|----------------------------------|--|
| 2025.01.01. ~ 2025.08.31. | 0.187% |
| 2025.09.01. ~ 2025.10.10. | -0.050(-0.039 × 40/31)% |
| 누 계 2025.01.01. ~ 2025.10.10. | 1.00137 배 (1+0.00187) × (1+ -0.00039 × 40/31) |

(2)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 발표, 2020년 = 100 기준)

$$\frac{2025년\ 08월}{2024년\ 12월} = \frac{120.12}{119.52} \approx 1.00502 \text{ (약 } 0.502\% \text{ 상승)}$$

(3) 시점수정치의 결정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그 특성상 정상적인 자가변동의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채택하였음.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 기호(1)은 비교 표준지A와 기호(2)는 비교표준지B와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비교치: 1.00)

평 가 의 견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 '전·답' 비교항목

| 조 건 | 항 목 |
|-------|--|
| 접근조건 | 교통의 편부(취락과의 접근성,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
| 자연조건 | 일조 등(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
| 획지조건 | 면적, 경사 등(면적, 경사,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
| 기타조건 | 기타(장래의 동향, 기타) |

평 가 의 견

* '대' 비교항목

| 조 건 | 항 목 |
|-------|---|
| 가로조건 | 가로의 구조 및 상태(폭, 보도, 포장, 계통 및 연속성) |
| 접근조건 | 인근 상가와의 접근성(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의 접근성(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대중교통의 유형과 노선),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환경조건 | 자연환경(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등, 지반, 지질 등), 인근 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변전소, 가스탱크, 우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
| 획지조건 | 규모, 형상 등(면적, 점면 너비 및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방위, 고저(경사지 등)], 점면도로 상태(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
| 기타조건 | 기타(장래의 동향, 기타) |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 기호 | 표준지 | 접근 조건 |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비교치 |
|-------------------------|-----|-------|-------|-------|--------|-------|-------|
| 1 | A | 1.05 | 1.00 | 1.00 | 1.00 | 1.00 | 1.050 |
| 표준지와 비교시 접근조건에서 5% 우세함. | | | | | | | |

| 기호 | 표준지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비교치 |
|-----------------------|-----|-------|-------|-------|-------|--------|-------|-------|
| 2 | B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0 |
| 표준지와 비교시 제개별요인에서 유사함. | | | | | | | | |

평 가 의 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필요성 및 근거

대법원판례 (2004.05.14 선고 2003다38207, 2003.07.25 선고 2002두505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 5호,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36538, 1991.12.8) 등에 따라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2) 인근 평가선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PA) 감정평가정보]

| no | 소재지 | 지목 | 이용 상황 | 면적 (㎡) | 용도 지역 | 토지단가 (원/㎡) | 기준시점 |
|----|-------------|----|----------|-----------|----------|---------------|------------|
| *1 | 덕양리 11** | 전 | 전 | 1,167 | 자연 녹지 | 209,000 | 2023.10.12 |

(전라남도 여수시)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PA) 감정평가정보]

| no | 소재지 | 지목 | 이용 상황 | 면적 (㎡) | 용도 지역 | 토지단가 (원/㎡) | 기준시점 |
|----|--------------|----|----------|-----------|-----------|---------------|------------|
| *2 | 동산동 13*-* | 대 | 단독 주택 | 26 | 1 중 일주 | 360,000 | 2023.12.27 |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가) 방법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가격제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한 가격과 비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한 가격과의 비율을 그 밖의 요인 보정치결정 참고자료로 산정함.

(나) 산식

| | | |
|---------|---|---------------------|
| 적용 선례 | : 선례 기준 기준시점 표준지가격 (적용선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 표준지공시지가 | : 기준시점 기준 표준지가격 (공시지가 × 시점수정) | |

평 가 의 견

(다) 보정치의 산정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점 이전인 선례*1,2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치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참고자료로 산정함.

① 표준지A : 평가선례 *1 기준

| 구분 | 기호 | 단가 (원/㎡)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산출가격 (원/㎡) | 보정치 |
|---|----|-------------|---------|----------|----------|---------------|----------------------------|
| 선례 | *1 | 209,000 | 1.02505 | 1.00 | 0.855 | 183,171 | 8.585 (적용: 8.58) |
| 지가변동률: 여수시 녹지지역 2023.10.12.~ 2025.10.10. 지역요인: 표준지와 선례는 유사함. 개별요인: 표준지는 평가선례와 비교시 접근조건에서 10% 열세, 환경조건에서 5% 열세함. | | | | | | | |
| 표준지 | A | 21,300 | 1.00167 | | | 21,336 | |

① 표준지B : 평가선례 *2 기준

| 구분 | 기호 | 단가 (원/㎡)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산출가격 (원/㎡) | 보정치 |
|--|----|-------------|---------|----------|----------|---------------|----------------------------|
| 선례 | *2 | 360,000 | 1.01405 | 1.00 | 1.050 | 383,311 | 1.436 (적용: 1.43) |
| 지가변동률: 여수시 주거지역 2023.12.27.~ 2025.10.10. 지역요인: 표준지와 선례는 유사함. 개별요인: 표준지는 평가선례와 비교시 가로조건에서 5% 우세함. | | | | | | | |
| 표준지 | B | 266,500 | 1.00137 | | | 266,865 | |

평 가 의 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의 결정

상기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평가선례, 실거래가, 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 | |
|-----|------|
| 표준지 | A |
| 보정치 | 8.58 |

| | |
|-----|------|
| 표준지 | B |
| 보정치 | 1.43 |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격의 결정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여 토지 시산가격을 결정함.

| 대상 토지 | 표준지(원/㎡) |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그밖 의 요인 | 산정단가 (원/㎡) | 결정단가 (원/㎡) |
|----------|----------|---------|----------|----------|----------|---------------|---------------|---------------|
| | 기호 | 공시지가 | | | | | | |
| 1 | A | 21,300 | 1.00167 | 1.00 | 1.050 | 8.58 | 192,212 | 190,000 |
| 2 | B | 266,500 | 1.00137 | 1.00 | 1.000 | 1.43 | 381,617 | 380,000 |

2)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가) 감정평가방법 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精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평 가 의 견

나) 거래사례의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선정함.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원(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 no | 소재지 | 지목 | 이용 상황 | 면적 (㎡) | 용도지역 | 토지단가 (원/㎡) | 거래시점 |
|----|--------------|----|----------|-----------|------|---------------|------------|
| #1 | 덕양리 10*** | 답 | 주상용 | 451 | 자연녹지 | 277,161 | 2023.08.22 |

(전라남도 여수시)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원(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 no | 소재지 | 지목 | 이용 상황 | 면적 (㎡) | 용도지역 | 토지단가 (원/㎡) | 거래시점 |
|----|---------------|----|----------|-----------|-------|---------------|------------|
| #2 | 동산동 38-*** | 대 | 주거 나지 | 55 | 1종 일주 | 492,620 | 2023.02.17 |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 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보정치: 1.00)

평 가 의 견

라)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전라남도 여수시

| 거래사례 | 용도지역 | 산정기간 | 지가변동률 |
|------|------|--------------------------|---------------------|
| #1 | 녹지지역 | 2023.08.22.~ 2025.10.10. | 1.02703 (2.703%) |
| #2 | 주거지역 | 2023.02.17.~ 2025.10.10. | 1.01838 (1.838%) |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 기호(1)은 거래사례 #1과 기호(2)는 거래사례 #2와 인근 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비교치: 1.00)

바)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 '전·답' 비교항목

| 조 건 | 항 목 |
|-------|--|
| 접근조건 | 교통의 편부(취락과의 접근성,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
| 자연조건 | 일조 등(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
| 획지조건 | 면적, 경사 등(면적, 경사,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
| 기타조건 | 기타(장래의 동향, 기타) |

평 가 의 견

* '대' 비교항목

| 조 건 | 항 목 |
|-------|---|
| 가로조건 | 가로의 구조 및 상태(폭, 보도, 포장, 계통 및 연속성) |
| 접근조건 | 인근 상가와의 접근성(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의 접근성(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대중교통의 유형과 노선),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환경조건 | 자연환경(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등, 지반, 지질 등), 인근 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변전소, 가스탱크, 우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
| 획지조건 | 규모, 형상 등(면적, 접면 너비 및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방위, 고저(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
| 기타조건 | 기타(장래의 동향, 기타) |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 기호 | 거래 사례 | 접근 조건 |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비교치 |
|---|-------|-------|-------|-------|--------|-------|-------|
| 1 | #1 | 0.88 | 0.90 | 0.90 | 1.00 | 1.00 | 0.713 |
| 거래사례와 비교시 접근조건에서 12% 열세, 자연조건에서 10% 열세, 획지조건에서 10% 열세함. | | | | | | | |

| 기호 | 거래 사례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비교치 |
|--|-------|-------|-------|-------|-------|--------|-------|-------|
| 2 | #2 | 0.90 | 0.90 | 1.00 | 0.95 | 1.00 | 1.00 | 0.770 |
| 거래사례와 비교시 가로조건에서 10% 열세, 접근조건에서 10% 열세, 획지조건에서 5% 열세함. | | | | | | | | |

평 가 의 견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격의 결정

| 대상 토지 | 거래사례(원/㎡) |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산정단가 (원/㎡) | 결정단가 (원/㎡) |
|----------|-----------|---------|----------|----------|----------|----------|---------------|---------------|
| | 기호 | 단가 | | | | | | |
| 1 | #1 | 277,161 | 1.00 | 1.02703 | 1.00 | 0.713 | 202,957 | 200,000 |
| 2 | #2 | 492,620 | 1.00 | 1.01838 | 1.00 | 0.770 | 386,289 | 390,000 |

3)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격

| 대상토지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 결정단가 (원/㎡) |
|------|--------------------------|--------------------------|---------------|
| 1 | 190,000 | 200,000 | 190,000 |
| 2 | 380,000 | 390,000 | 380,000 |

4) 토지시산가격 결정의견

상기 산정된 토지 시산가격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 가기준법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 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로 결정하였음.

평 가 의 견

6. 감정평가액 결정

1) 결정의견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감정평가 관계법령의 규정과 본건 감정평가목적 및 대상 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음.

2) 감정평가액 결정

| 구분 | 총면적(㎡) | 감정평가액(원) |
|------------|--------|-------------|
| 토지 | 1,366 | 285,380,000 |
| 제시외수목 | 1식 | 4,400,000 |
| 합 계 | | 289,780,000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단 가 | 금 액 | |
| 1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 1142 | 전 | 자연녹지 | 1,230 | 1,230 | 190,000 | 233,700,000 | |
| | | | | | | | | ₩233,700,000 | |
| (ㄱ) | (제시외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 1142 지상 | 수목 | 감나무, 복숭아나무, 앵두 등 | (1식) | 1식 | - | 4,400,000 | |
| | | | | | | | | ₩4,400,000 | |
| 2 |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동 | 127-1 | 대 | 1종일주 | 136 | 136 | 380,000 | 51,680,000 | |
| | | | | | | | | ₩289,780,000.- | |
| | | | | 이 | 하 | 여 | 백 | |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소재 상세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기호(2)는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동 소재 여수검역소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기호(1)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2)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임.

기호(2) :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주거나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진입로 소재함.

기호(2) :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여수공업고등학교,종고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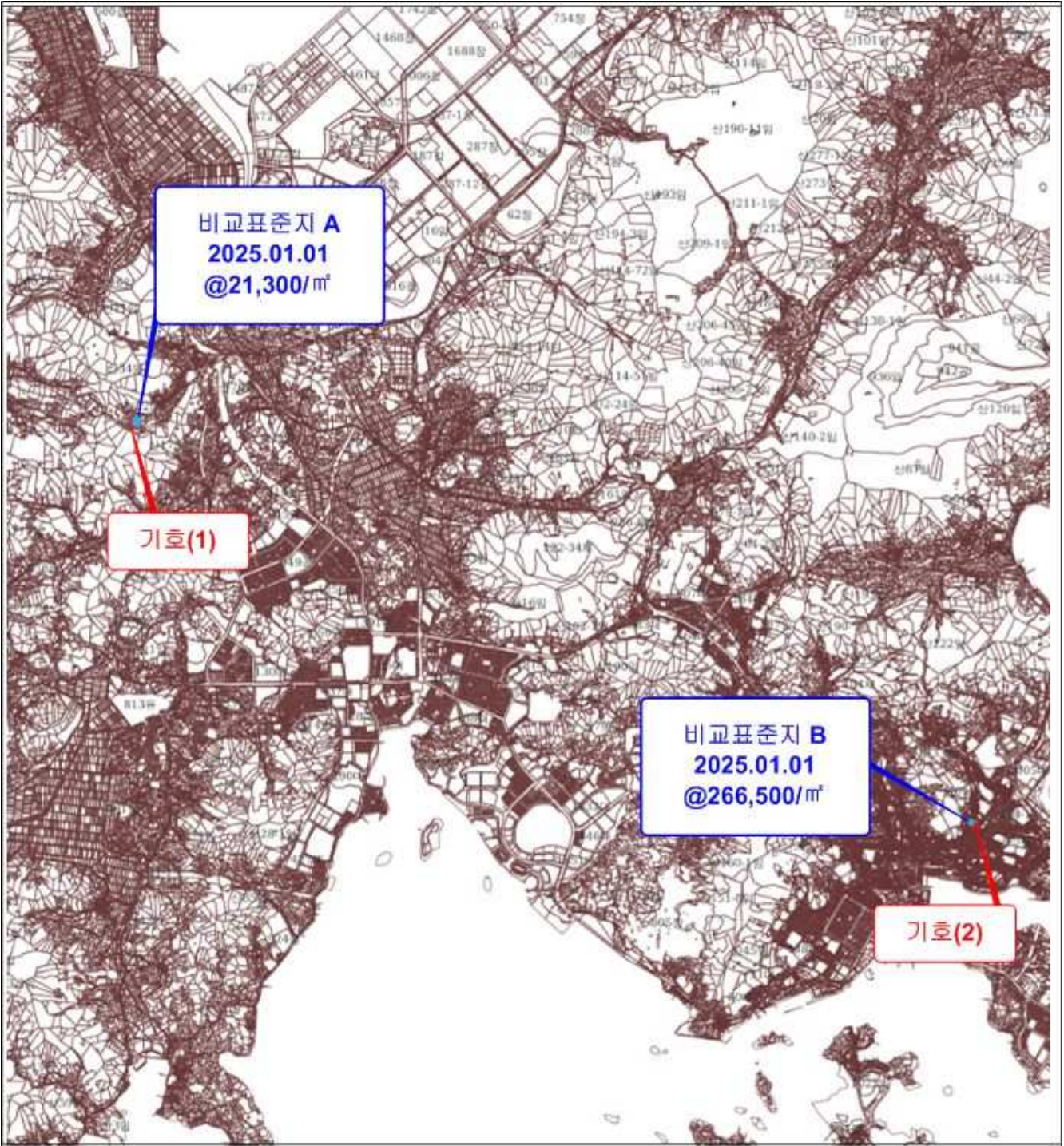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142 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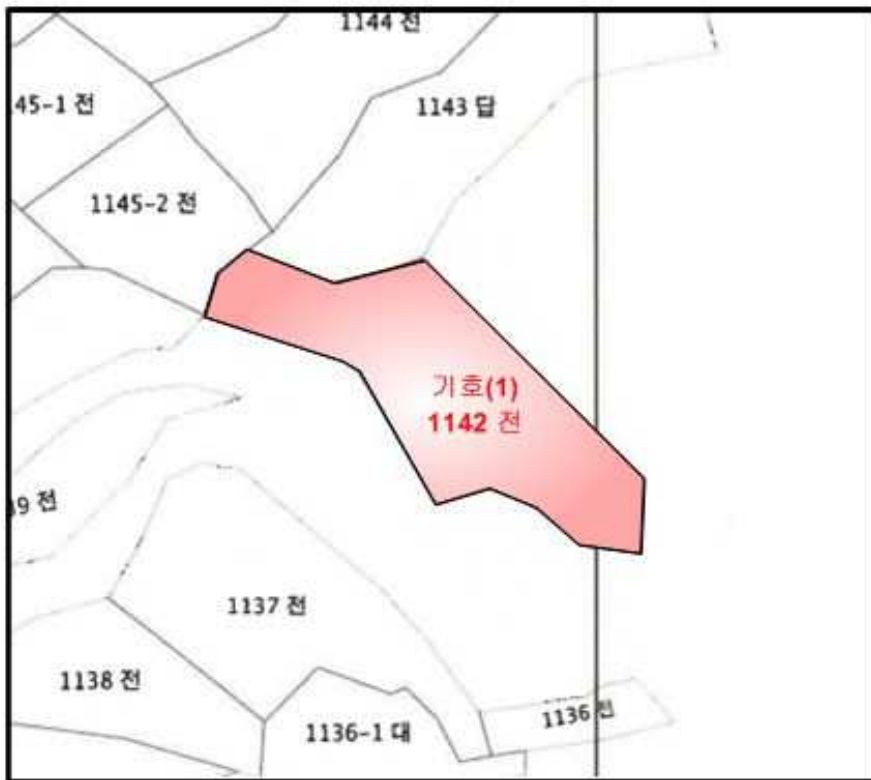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142 외



지 적 도



S = 1/1200



범
례

| | | | | | |
|--|-------------|--|---------------|--|-----------------|
| | 평 가 대 상 토 지 | | 용 도 지 역 구 분 선 | | 평 가 건 물 3 층 이 상 |
| | 도 | | 로 | | 평 가 제 외 건 물 |
| | 도 시 계 획 선 | | | | 제 시 외 물 건 |
| | | | | | |

지 적 도



S = 1/1200



| | | | | | | |
|----|--|--------|--|---------|--|------------|
| 범례 | | 평가대상토지 | | 용도지역구분선 | | 평가건물 3층 이상 |
| | | 도로 | | 평가건물 1층 | | 평가제외건물 |
| | | 도시계획선 | | 평가건물 2층 | | 제시외물건 |



1



1



1



1



2



2

